#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25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윤한홍

고동진 · 김소희 · 권영진

주호영 · 이달희 · 이헌승

임종득 • 권성동 • 권영세

송언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 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다만,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그 수 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	①
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	
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	
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	
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그 수익증권을 발
	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